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08 | 2025.11.24 (2025.11.17~2025.11.2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 도심지 위주로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실제 근로기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연평균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는 철강 관련 품목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하는 등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일·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소비자도 일괄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회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2인)**」 ,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체계 확립,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업종·규모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품질 향상·표준화 플랫폼 구축, AI 전문기업 육성,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과 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오세희의원 등 11인)**」 ,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11.27.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문체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발표(금융위원회) 7
- 「도심지 등 신속 공급 위한 국토부-LH TF」 출범(국토교통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1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2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1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3
-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15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15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1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1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17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19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1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2인) 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1인) 20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2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
-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오세희의원 등 11인) 22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22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2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4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25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25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1. 본회의 일정
-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유라시아] 우크라이나 Defense City 제도 도입과 주요 내용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발표 -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주주총회, 임원보수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주주권익 제고 추진	2025-11-17
-------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첫째,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

[영문공시 확대 : 2단계 의무화 시행, 3단계 의무화 추진]

현재 ①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24말 기준: 111사)는 ②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공시 중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 대해 ③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음(‘24.1월 시행)

’26.5.1일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26.3.1일 시행). ①대상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24말 기준: 265사) ②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 ③공시 기한도 단축하여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

[상장사 영문공시 지원 및 영문공시 정보 활용도 제고]

상장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영문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번역지원을 강화.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번역 소요 시간(현재 평균 1일 소요)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 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 및 산업·업종별 특화된 용어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는 영문공시 용어집을 발간·배포하고, 영문공시 관련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내도 제공할 계획

둘째,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6.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함.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

[주주총회 분산개최 유도]

그간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운영,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하고 있으나 상장사의 약 90%는 주주총회를 3월 하순에 집중개최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형식적인 주주총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4월 주주총회 개최 유도 등 주주총회 분산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 아울러 의결권기준일을 상장사 표준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노력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

[임원보수 공시 강화]

①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이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시

② 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 주식매수선택권外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

국토교통부

「도심지 등 신속 공급 위한 국토부-LH TF」 출범

- 국토부-LH 합동 TF 출범… 내부 조직 개편하고, 가용 자원 총동원
- 정비사업만 전담하는 조직 신설 통해 도심지 공급 속도의 획기적 향상 도모
- LH 전체 경영진에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에 임해줄 것을 주문

2025-11-20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 도심지 위주로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5년간('26~'30)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심 공급 물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 및 쟁점 사항 조정 등을 통한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음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TF임.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이를 통해 부지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하여 국민이 원하는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시기를 단축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도 충족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함

또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함

한편,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됨.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산업통상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2025-11-21 시행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5년 11월 23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나,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28 시행 예정
----------	-------------------------------------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967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영주차장의 규모를 주차구획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해당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전 검토 절차로서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해당 설치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 등을 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제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18 시행
-------	-----------------------------------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인정보단말기 검증기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휠체어 접근성, 한국수어·문자·음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을 배치하면서 호출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21 시행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직무·소양 및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 등으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12시간 이상 받도록 하며,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이수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17. ~2025.12.12.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고 장기고용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실제 근로기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연평균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2, 팩스: 044-215-8063\)](tel:044-215-413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20. ~2025.12.30.
---------	--------------------------	-----------------------------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제(대통령령 제24865호, 2013. 11. 20. 공포, 2014. 2. 23. 시행)가 2026. 1. 1. 일몰제 기한 도래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2 제8호가목)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65\)](tel:044-203-2443)

산업통상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18. ~2025.12.29.
-------	------------------	-----------------------------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따라 국내로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철강재 수입시 HS코드, 원산지 오기 등 부정확한 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정확한 수입 데이터는 단순히 세관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무역협정 이행, 불공정 수입재 대응 등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또한, 최근 수입 철강재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로,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정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및 우회 수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필요함

주요 내용은

① 철강 관련 품목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시행령 제16조)

- 품질검사증명서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제조자, 물리적 특성 등 주요 품질사항을 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되는 서류
- 시행령 제16조에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수입업자의 품질검사증명서 외 추가 서류 제출 부담 미발생, 동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 철강재 확정 등을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도 개정할 예정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전화: 044-203-4692, 팩스: 044-203-4717\)](tel:044-203-469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17
~2025.12.15.

비상장 벤처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도 주식연계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한 기술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전화: 044-204-7708, 팩스: 044-204-7709\)](tel:044-204-7708)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19.
~2025.12.29.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기준의 현행 계산식은 미래에 소요될 건설비를 현 시점에서 우선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여 전체 사업기간 동안 소요되는 총수입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방식(현행 시행령 별표 2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환경과 \(전화: 044-203-5343, 팩스: 044-203-4768\)](tel:044-203-5343)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19.
~2025.12.29.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로 집행하는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소관 위원회를 통한 설계심의 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타 기관 설계심의위원을 공동활용 하도록 함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된 기타공공기관 및 국책연구소 소속 건설기술 분야 전문가도 설계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전화: 044-201-3565, 팩스: 044-201-5551\)](tel:044-201-356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2025-11-17 발의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 정도 “통제”하는 것을 두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해당하여야 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됨.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가맹사업 정의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통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다른 요건(영업표지 사용, 교육·지원, 가맹금 수수 등)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통제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형태의 사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기대하고 가맹금을 지급하더라도 분쟁 시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2025-11-17 발의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4 신설 등)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025-11-17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허가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단체소송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송허가제 폐지 요구가 제기됨. 아울러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계속을 그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도 포함하여 확대하는 등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한 효과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의 차원에서 그와 동일·유사한 피해사례의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일괄적 피해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하는 등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일·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소비자도 일괄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구제 및 단체소송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59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2025-11-18 발의

최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의 악화로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실패확률이 낮은 가맹계약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창업희망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5조의2 신설)**

또한 가맹점 형태의 창업은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에 해당하지만,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등 법상 여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물품공급계약이나 용역도급 계약 등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가맹사업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정 절차에서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가맹본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협의회의 조정절차는 종료됨

이처럼 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장·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의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신속한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으로 협의체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정기록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제23조의2제4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025-11-17 발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2025-11-20 발의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 주식 수의 50% 1주를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 구조조정의 위축 우려 및 IMF의 폐지 요구 등으로 1998년 폐지되었음

그러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인이 피인수인에게 지불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모든 주주에게 공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인수자에게만 귀속되고 있으며, 지배주주 역시 주식 양도 시 별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받을 수 있음에 따라 주가를 높게 유지할 유인을 적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수권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회수의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회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정무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2025-11-20 발의

현행법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인금융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에 따른 번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는 법률관계의 확정과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채권의 소멸을 존중함으로써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반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및 완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개인채무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정보비대칭 구조에 놓여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2025-11-18 발의

정부는 2030년 K콘텐츠 시장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웹툰과 출판물 제작비용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게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 매출액은 23조 원,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4위로 나타남.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비 증가와 투자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게임콘텐츠 분야는 높은 부가가치와 수출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실정임

이에 영상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2025-11-20 발의

현행법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부터 600억원까지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6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2025-11-21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특례 종료 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0년의 감면 기간 중 초기 3년은 소득세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

국방위원회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2025-11-17 발의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학계·산업체·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양성된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2인)

2025-11-17 발의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조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1인)

2025-11-17 발의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유료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렵고, OTT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7조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법수의원 등 11인)

2025-11-17 발의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함) 등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문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뉴스를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본의 영향력 배제 및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의 소유제한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6조 및 제18조)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11-20 제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있어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의 결격사유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만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도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2025-11-17 발의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공지능(AI) 도입률이 극히 저조하여 생산성 정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데이터 활용 기반 부족과 전문인력·자금 지원의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개별 정책만으로는 AI 전환(AX)을 통한 혁신 도약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은 중소기업부장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체계 확립,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업종·규모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품질 향상·표준화 플랫폼 구축, AI 전문기업 육성,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과 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2025-11-18 발의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많은 회생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철도사업자는 회생전력을 최대한 생산·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회생제동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92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025-11-19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설비 변경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데, 이로 인해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허가·비허가의 판단이 불명확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이 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사업 인·허가 및 설비정보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사업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10조의2·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3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025-11-17 발의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23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5-11-17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부터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작업과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6조 및 제175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5-11-18 발의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3조, 안 제171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4인)

2025-11-19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5-11-20 발의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 (안 제175조제4항제3호)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5-11-19 발의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2025-11-20 발의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어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20조)**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2025-11-20 발의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

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다소 지연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 활용과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 시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2025-11-20 발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1/27(목)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11/24(월) 10: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11/26(수) 14:00	- 고유법 심사, 타위법 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11/24(월) 10:00	- 법안 상정
	법안심사1소위	11/24(월) 11:00	- 법안 심사
	법안심사2소위	11/25(화) 10:00	- 법안 심사
기재위	조세소위	11/24(월) 09:00	- 법안 심사
	예산결산소위	11/27(목) 10:00	- 보증동의안 심사
	전체회의	11/28(금) 14:00	- 법안 의결, 보증동의안 의결
과방위	전체회의	11/24(월) 15:00	- 입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법안 의결
문체위	전체회의	11/28(금) 09:30	- 법안 의결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11/24(월) 15:30	- 법안 의결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11/24(월) 10:00	- 법안 심사
	교통법안소위	11/26(수)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24(월) 15:00	한미협상 평가와 한국의 실익 전략	김건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4(월) 15:00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	전현희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11/25(화) 10:00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 정기 세미나	송기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25(화) 14:00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토론회: 모듈러주택 공급 지체요인과 개선과제	김소희·김은혜 의원실 등	국회본관 245호실
	11/26(수) 07:00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정동영·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1/26(수) 09:30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	박성훈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6(수) 09:30	해상풍력특별법 시대,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박지혜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11/26(수) 10:00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AI 대전환, 선언에서 실행으로' 토론회 시리즈	김한규·배현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11/26(수) 13:3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와 산.학.연 및 소비자의 역할: 2025 전기차리더스포럼	강득구·안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11/27(목) 10:00	방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세미나: 방산 혁신클러스터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강대식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7(목) 10:30	3차 상법개정 토론회: 자기주식 소각 강제의 문제점과 대안	서범수·권영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8(금) 09:30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 방안	신동욱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11/24(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2호(2025-22호) 발간	국회도서관	
	11/2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5호(2025-22호) 발간		
	11/26(수)	「금주의 서평」 제755호(2025-46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17(월)	「Data+」 제22호(2025-22호)	국회도서관	
	11/19(수)	「금주의 서평」 제754호(2025-45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20(목)	유라시아	우크라이나 Defense City 제도 도입과 주요 내용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